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0. 20.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306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4. 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

나. 상정의결

- 제28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 (2020. 10. 20.)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뉴디자인국장 : 김희주)

가. 제안이유

- 강남구를 문화 중심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문화도시의 기본방향과 그 추진체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기본이념, 정의(안 제1조~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역할(안 제5조~제6조)
- 문화도시 시책의 추진체계(안 제14조~제15조)
- 강남구 문화예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6조~제20조)
- 문화예술축제의 육성(안 제21조~제23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입법예고(2020. 6. 19.~ 7.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 반영(안 제23조)
 - ▶ 위탁대행 선정 절차 규정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서 검토의견 반영(안 제16조)
 - ▶ 강남구문화예술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 조성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를 모색하는 ‘문화도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지속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문화적 기반과 역량을 갖춘 도시를 대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계획 전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4.1.28.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문화도시 지정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문화도시 기반이 조성됨.

- 2018년도부터 「지역문화진흥법」상 문화도시²⁾ 지정 사업 추진을 통해 각 지역에 특화된 사업모델로 발전시켜 성공사례를 창출하려는 것임.

1) *유럽 문화수도 사업('85~), 아메리카 문화수도('00~),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04~) 등

2)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음.

지자체	사업명
경기 부천시	생활문화도시 부천
강원 원주시	시민이 만들어가는 창의문화도시 원주
충북 청주시	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
충남 천안시	시민의 문화자주권이 실현되는 문화독립도시 천안
경북 포항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철학(鐵學)문화도시 포항
제주 서귀포시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露地) 문화 서귀포
부산 영도구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
인천 부평구	삶의 소리와 함께 내 안의 시민성이 자라는 문화도시 부평
경기 오산시	‘이음’으로 생동하는 문화도시 오산
강원 강릉시	아름답고, 쾌적하며, 재미있는 문화도시, 시나미 강릉
강원 춘천시	시민의 일상이 문화가 되고 문화적 삶이 보장되는 전환문화도시 춘천
충남 공주시	안녕! 이야기문화도시공주
전북 완주군	공동체 문화도시 완주
전남 순천시	정원을 품은 생태문화도시, 순천
경북 성주군	다양한 문화가치가 공존하는 생명문화도시 성주
경남 통영시	도시 그 자체가 예술, 통영
제주 제주시	시민이 만드는 문화, 수놓음 도시 제주

○ 한편, 우리 구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상의 문화도시 지정과는 별도로 문화도시 기본 조례를 자치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임.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는 <예시>³⁾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3조(정의)에서는 ‘문화도시’를 정의하고 있는 바 추상적·선언적 규정으로 기본조례의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문화도시의 정책 비전이나 목표를 지향하는 규정으로 보임. 정의규정을 두는 취지는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 조례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분쟁을 미리 예방하여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

3) <예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문화도시 시책의 기본방향과 그 추진체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를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그 밖에 용어는 문화분야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것은 자치조례의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는 문화도시시책 추진에 관하여 기본법적 성격을 반영한 규정으로 보임. 다만, ‘문화도시’의 정의가 모호한 바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이고 입법체계상 제6조(구민의 역할) 다음에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구청장의 책무)제4항 중 ‘구청장은 구의 전통’을 <예시>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짐.

- 안 제7조(문화예술의 육성 등)부터 제13조(문화교류의 확대)까지는 기본조례의 성격에 맞게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규정으로 보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⁵⁾에서는 ‘문화예술’, ‘문화시설’, ‘문화산업’의 용어를 규정하고 있음.

4) <예시>

제5조 ④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전통 ---

5)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 마.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문화시설의 종류) ①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활동시설
 2. 문화 보급·전수시설
 3. 삭제 <2019. 4. 16.>
-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 (제2조제2항 관련)

1. 공연시설

가.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 1) 종합공연장: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 안 제14조(문화도시발전계획의 수립·시행) 중 ‘①’은 오타로 삭제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도시발전계획’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이라면 수립기간(3년 또는 5년), 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예시6)와 같이 명확히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나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7)제4조에 구청장은 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수립 시

2) 일반공연장: 시·군·구 문화예술회관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3) 소공연장: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나.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

다. 야외음악당 등: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외의 시설

2. 전시시설

가.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나.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

다. 화랑: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라. 조각공원: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3. 도서시설

가. 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나. 작은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

4. 지역문화활동시설

가. 문화의 집: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나. 삭제 <2019. 4. 16.>

다. 문화체육센터: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

라.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5. 문화 보급·전수시설

가.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나. 국악원: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

다. 전수회관: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6. 종합시설: 제1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의 시설과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이 복합되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

6) <예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7)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청취,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바 법령에 따른 ‘구 시행계획’인 법정계획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문화도시발전계획이 유사한 중복계획으로 실효성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는 바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안 제15조(구민의 의견수렴) 중 ‘문화도시 발전 계획’은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문화도시발전계획’으로 하고 계획수립 시 의견수렴 절차가 있으나,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서도 구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유사계획에 대한 중복규정으로 보여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안 제16조(강남구 문화예술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의 제목을 ‘(문화예술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예시>⁸⁾와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제5항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전체 구성이 아닌 위원 개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성격이 달라 조항을 분리하여 <예시>⁹⁾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제4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군·구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시행계획 및 시·군·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평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시·군·구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예시>

4. 구의 문화도시 관련 계획에 제안 및 사업에 대한 평가
5. 구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료발간·보급 등 홍보

9) <예시>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뉴디자인국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문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문화·예술·역사 등 분야에 탁월한 성과 및 경험이 있는 자

제6항 중 ‘위원회의 담당과장’ 을 ‘문화체육과장’ 으로 <사례>¹⁰⁾와 같이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따라서 제16조는 <예시>¹¹⁾와 같이 각각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

2. 문화·예술·역사 등 분야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3. 그 밖에 문화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연 2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문화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회의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0) <사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⑥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일자리정책과장**이 된다.

11) <예시>

제16조(문화예술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시책 등을 심의·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강남구문화예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에 응한다.

1. 문화도시발전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
2. 구의 문화시책 및 사업에 대한 자문
3. 문화도시 시책의 연구 및 개발
4. 구의 문화도시 관련 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제안
5. 구민 공감대의 형성 및 이를 위한 자료발간·보급 등 홍보
6. 시책개발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7. 그 밖에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뉴디자인국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문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문화·예술·역사 등 분야에 탁월한 성과 및 경험이 있는 자
2. 문화·예술·역사 등 분야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3. 그 밖에 문화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연 2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문화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회의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17조(위원의 해촉) 및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은 위원회 운영의 일반적인 사항으로 판단됨.

- 안 제20조(위원회의 수당) 중 ‘자문위원’ 을 ‘위원’ 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21조(문화예술축제의 육성)부터 제23조(문화예술축제사무의 위탁 등)까지의 규정은 축제와 관련한 것으로 보임. 다만, 문화예술축제가 특정한 축제를 의미하는지, 포괄적인 축제를 의미하는지 모호하여 <사례>¹²⁾와 같이 정의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12) <사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문화예술축제“란 시, 자치구 또는 민간에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로써 시민화합 및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문화적·예술적 또는 민속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 “문화예술축제“란 강남구가 구민화합이나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대상이나 분야를 선별하여 정해진 날이나 기간을 정하여 문화적·예술적 또는 민속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행사를 말한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해당 조례안에 대한 필요성은 동의하나 강남구의 지역 특성에 맞는 내용이 조례안에 기재 되어 있지 않은 것에 아쉬움이 있어, 우리 구의 정체성을 발현할 수 있는 조례를 검토하시어 향후 개정안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함.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민간위탁보다는 주민참여나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들로 이루어진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수정이 필요한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의견은.

○ 사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기에는 인력 부족 등 여러 어려운 점이 있으나, 위원회의 안대로 주민 참여 등 보다 다양한 문화도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해당 조항 삭제 및 기타 질의 및 간담회 시 언급 된 사항을 수정 한다면 수정안에 동의하도록 하겠음.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306호

제안일자 : 2020.10.20.

제안자 : 행정재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위원회 및 문화예술축제사무의 위탁 관련 조항을 수정 및 삭제하고 일부 조문의 자구를 입법체계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2. 수정주요내용

- “문화예술축제”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
-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자구 수정(안 제15조)
- 조의 제목 및 위원회 자문 내용을 구체화 하여 수정(안 제16조)
- 위원회의 구성·임기·운영 관련 조항 신설(안 제17조, 제18조, 제21조)
- 위원회의 회의 조항 삭제
- 문화예술축제사무의 위탁 조항 삭제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전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문화도시 시책의 기본방향과 그 추진체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품격과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림으로써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 “문화도시”란 다음 각 호의 실현을 바탕으로 하여 일상 속에서 문화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1. 삶이 곧 문화가 되는 일상과 밀접한 문화예술의 구현
2. 인간중심의 쾌적한 문화공간의 조성
3. 기본적인 문화향유가 보장되는 문화복지의 실현
4.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진흥
5.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문화의 정착

② “문화예술축제”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구민화합이나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대상이나 분야를 선별하여 정해진 날이나 기간을 정하여 문화적·예술적 또는 민속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행사를 말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문화분야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문화도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도시 시책은 지역별·문화예술분야별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구민이 생활하는 일상공간을 문화도시에 부합하도록 그 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적·국제적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역할) 구민은 더불어 사는 건전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이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시책(이하 “문화도시 시책”이라 한다)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문화도시시책의 기본방향

제7조(문화예술의 육성 등)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문화시설과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시설 조성과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의 협력을 유도하며,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제8조(문화도시환경의 조성) 구청장은 구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복원하면서 도시경관을 예술적·미학적으로 조화롭게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제9조(문화복지의 증진)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활동의 주체가 되는 시책을 추진하며, 지역 내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 문화예술행사정보를 구민에게 시의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문화산업의 육성) 구청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기술·인력·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문화관광의 개발) 구청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 문화도시환경, 문화산업 등 인프라를 구의 홍보와 관광에 연계하는 시책을 발굴·시행하여 구 경제부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12조(건전한 지역문화의 정착)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건강한 지역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의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과 공동체문화의 정착에 기여하는 구

민의 자발적인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 제13조(문화교류의 확대)** ①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문화예술 및 문화관광 관련정보의 교류와 문화도시 시책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구의 문화시설, 문화예술인, 문화활동 후원기업의 상호 교류를 위한 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장 문화도시 시책의 추진체계

제14조(문화도시발전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문화도시 정책이 기본방향에 따라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도시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구민의 의견수렴)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문화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일반 구민과 문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장 강남구 문화도시자문위원회

제16조(문화도시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시책 등을 심의·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강남구 문화도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에 응한다.

1. 문화도시발전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

2. 구의 문화시책 및 사업에 대한 자문
3. 문화도시 시책의 연구 및 개발
4. 구의 문화도시 관련 계획에 제안 및 사업에 대한 평가
5. 구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료발간·보급 등 홍보
6. 시책개발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7. 그 밖에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뉴디자인국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문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문화·예술·역사 등 분야에 탁월한 성과 및 경험이 있는 자
2. 문화·예술·역사 등 분야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3. 그 밖에 문화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위원회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은 심의·자문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연 2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문화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회의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회의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문화예술축제의 육성

제23조(문화예술축제의 육성) 구청장은 구민의 참여적이고 지역적·국제적인 문화예술축제의 육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문화예술축제의 개최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의 대표 문화예술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306
----------	-----

제출년월일 : 2020. 9. 4.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문화체육과

1. 제안이유

강남구를 문화 중심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문화도시의 기본방향과 그 추진 체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기본이념, 정의(안 제1조~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다.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역할(안 제5조~제6조)

라. 문화도시 시책의 기본방향(안 제7조~제13조)

마. 문화도시 시책의 추진체계(안 제14조~제15조)

바. 강남구 문화예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6조~제20조)

사. 문화예술축제의 육성(안 제21조~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0.6.19. ~ 2020.7.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 반영(안 제23조)

- 위탁대행 선정 절차 규정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서 검토의견 반영(안 제16조)

- 강남구문화예술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 조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문화중심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문화도시 시책의 기본방향과 그 추진체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품격과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림으로써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실현을 바탕으로 하여 일상 속에서 문화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1. 삶이 곧 문화가 되는 일상과 밀접한 문화예술의 구현
2. 인간중심의 쾌적한 문화공간의 조성
3. 기본적인 문화향유가 보장되는 문화복지의 실현
4.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진흥
5.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문화의 정착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문화분야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시책(이하 “문화도시 시책”이라 한다)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문화도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도시 시책은 지역별·문화예술분야별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구민이 생활하는 일상공간을 문화도시에 부합하도록 그 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적·국제적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역할) 구민은 더불어 사는 건전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이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장 문화도시시책의 기본방향

제7조(문화예술의 육성 등)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문화시설과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시설 조성과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의 협력을

유도하며,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제8조(문화도시환경의 조성) 구청장은 구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복원하면서 도시경관을 예술적·미학적으로 조화롭게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제9조(문화복지의 증진)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활동의 주체가 되는 시책을 추진하며, 지역 내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 문화예술행사정보를 구민에게 시의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문화산업의 육성) 구청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기술·인력·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문화관광의 개발) 구청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 문화도시환경, 문화산업 등 인프라를 구의 홍보와 관광에 연계하는 시책을 발굴·시행하여 구 경제부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한 지역문화의 정착)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한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건강한 지역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의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과 공동체문화의 정착에 기여하는 구민의 자발적인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3조(문화교류의 확대) ①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문화예술 및 문화관광 관련정보의 교류와 문화도시 시책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문화시설, 문화예술인, 문화활동 후원기업의 상호 교류를 위

한 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장 문화도시 시책의 추진체계

제14조(문화도시발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문화도시 정책이 기본방향에 따라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구민의 의견수렴)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문화도시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일반 구민과 문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장 강남구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제16조(강남구 문화예술자문위원회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강남구문화예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문화도시발전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
2. 구의 문화시책 및 사업에 대한 자문
3. 문화도시 시책의 연구 및 개발
4. 구의 문화도시 관련 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제안
5. 구민 공감대의 형성 및 이를 위한 자료발간·보급 등 홍보
6. 시책개발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7. 그 밖에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뉴디자인국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문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문화·예술 · 역사 등 분야에 탁월한 성과 및 경험이 있는 자

2. 문화·예술 · 역사 등 분야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3. 그 밖에 문화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담당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회의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위원회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심의·자문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연 2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위원회의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문화예술축제의 육성

제21조(문화예술축제의 육성) 구청장은 구민의 참여적이고 지역적·국제적인 문화예술축제의 육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문화예술축제의 개최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의 대표 문화예술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문화예술축제사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축제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에게 그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강남구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회의 참석수당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제1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3. 미첨부 사유

- 강남구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회의 참석수당 등)이 3억원 미만임

4. 작성자

- 문화체육과 지방행정서기 천우진(02-3423-5935)